1. 2018년 건강 •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
- 아버지, 어머니 서류 모두 제출 ※ 부모 중 돌아가신 분이 계실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
- 부모 중 한 분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, 다른 부/모의 납부사실이 없을 경우 (즉, 부모 중 한 분(세대주)의 피부양자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가입 돼 있는 경우) 2019년 7월 중 발급받은 **피부양자 자격득실 확인서** (피부양자 본인이 발급 받아야 함)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(세대주가 피부양자를 포함하여 발급받 아야 함)를 제출 해야 함.
-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
- 사본 제출 가능

부·모 두 분 모두 납부하는 경우,

- 두 분의 건강・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함.



(위 납부확인서는 예시용,

빨간색 네모 칸의 기간이 2018년 1월~2018년 12월이 나오도록 발급)

부·모 중 한 분만 납부하는 경우 (아래 1&2 모두 제출)

- 1. 부양자의 건강・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- 2. 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또는 피부양자의 자격득실확인서

	건경	보험 자격	역확인(통)	보)서	
통보번호 :	70.0	-			
수신기관명	70.00	자	격확인요청일	No. of Concessions	
중 번 호	75.6	사	엄장관리변호	24.00	
가 입 자	성명		주 민 등 목 번 호		
(세대주)	16.6766	-	TA A CONTINUE		
		자격확	인 내 역	40	
성명	주민등록번호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	급여정지사유 및 기간	
부양자	AND ROOM	41 141		S	
피부양자	N 16 18 18	15.5	피부양자 기	다격취득일이	
NAME OF TAXABLE PARTY.		10.74	해당년도 이전이어야 함		
		이하여백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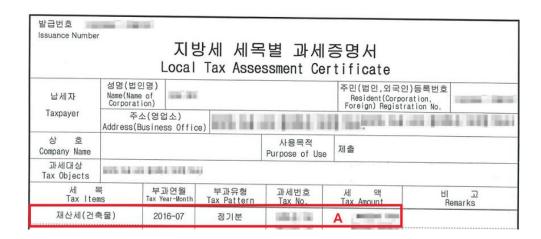
발급번호 :										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									
확인청구자		성명		주 민 등 록 번 호						
		ereproduction.		eroperature.						
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										
No	No 가입자구분		사업장명칭		자격취득일	자격상실일				
1	 . 직장피부양자		erroren en doct.	해당년도 가역	입자구분이	****				
2	2 지역세대원		Xe3/11	피부양자로	병시되어	100000000				
				있어야 함	70					

자격취득일이 2018년도에 변경된 경우 (아래 1&2 모두 제출)

- 1. 부양자의 건강・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- 2. 피부양자 자격취득 이전의 건강・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&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
2. 2018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

- 아버지, 어머니 서류 모두 제출※ 부모 중 돌아가신 분이 계실 경우 해당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
- 구청 및 동/주민 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가능
- 사본 제출 가능
- **과세사실이 없는 경우라도 서류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.**(과세사실이 없을 경우 "과세사실 없음"으로 서류 발급 됨, 아래 사진 참고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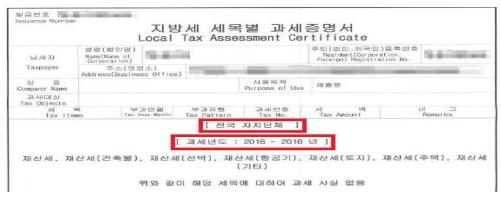


(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예시용,

빨간색 네모 칸의 부과연월 부분이 2018년으로 나오게 발급)

★부 또는 모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이 경우 아래 Sample과 같이 '과세 사실 없음'이라고 명시됨



잘못된 서류

아래의 서류는 서류를 발급한 시점에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..

